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 규정

2018년 3월 31일

㈜핑거

목 차

제1장 총칙

제1조 (목적)

제2조 (적용범위)

제3조 (용어정의)

제2장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의무와 책임

제4조 (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)

제5조 (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의무와 책임)

제6조 (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 및 의무와 책임)

제3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운영

제7조 (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)

제4장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기술적, 관리적 안전조치

제8조 (개인정보취급자 접근 권한 관리 및 인증)

제9조 (비밀번호 관리)

제10조 (접근통제)

제11조 (개인정보의 암호화)

제12조 (접근기록의 보관 및 위.변조 방지)

제13조 (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)

제14조 (물리적 접근제한)

제5장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훈련

제15조 (개인정보보호 교육의 목적)

제16조 (개인정보보호 교육의 세부 사항)

제6장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시 조치

제17조 (개인정보 침해사고 조치)

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 규정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,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, 활용, 저장, 파기 등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변조·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

본 규정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회사 임직원 및 외부 협력업체의 임직원, 프리랜서에 적용한다.

제3조(용어 정의)

-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- ① "개인정보"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, 주민등록번호, 계좌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(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고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)를 말한다.
- ② "정보주체"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.
- ③ "개인정보파일"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.
- ④ "개인정보보호담당부서" 개인정보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부서를 의미한다.
- ⑤ "개인정보처리자"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, 법인,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.

- ⑥ "개인정보 보호책임자"라 함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- ⑦ "개인정보취급자"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·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임직원, 파견근로자, 시간제근로자 등을 말한다.
- ⑧ "정보통신망"이란 「전기통신기본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·가공·저장·검색·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.
- ⑨ "개인정보처리시스템"이라 함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말한다.
- ⑩ "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발/운영부서" 개인정보의 수집, 저장 및 사용을 위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개발, 운영하는 IT부서를 의미한다.
- ① "내부망"이라 함은 물리적 망 분리, 접근통제시스템 등에 의해 인터넷 구간에서의 접근이 통제 또는 차단되는 구간을 말한다.
- ② "비밀번호"라 함은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, 업무용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에 접속할 때 식별자와 함께 입력하여 정당한 접속 권한을 가진 자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전달해야 하는 고유의 문자열로서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정보를 말한다.
- ③ "접속기록"이라 함은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수행한 업무 내역에 대하여 식별자, 접속일시, 접속자를 알 수 있는 정보, 수행업무 등 접속한 사실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을 말한다.
- ④ "바이오정보"라 함은 지문, 얼굴, 홍채, 정맥, 음성, 필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그로부터 가공되거나 생성된 정보를 포함한다.
- ⑤ "P2P(Peer to Peer)"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되어 파일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.
- ⑥ "공유설정"이라 함은 컴퓨터 소유자의 파일을 타인이 조회·변경·복사 등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.

- ⑦ "보조저장매체"라 함은 이동형 하드디스크(HDD), USB메모리, CD(Compact Disk), DVD(Digital Versatile Disk), 플로피디스켓 등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매체로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용 컴퓨터 등과 용이하게 분리할 수 있는 저장매체를 말한다.
- ® "위험도 분석"이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적용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수단과 유출 시정보 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과 그 위험의 정도를 분석하는 행위를 말한다.

제2장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의무와 책임

제4조(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)

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담당임원 또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고충처리를 담당 하는 부서의 장 또는 개인정보 취급부서의 장이어야 한다.

제5조(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의무와 책임)

-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권한 및 의무를 가진다.
 - 1. 개인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총괄
 - 2. 임직원 및 외부 인력에 의한 위법·부당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한 점검
 - 3. 개인정보 주체로부터 제기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불만이나 의견 처리 및 감독
- ② 기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

제6조(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 및 의무와 책임)

- ① 개인정보취급부서의 장은 업무상 필요한 최소의 인력만을 개인정보취급자로 지정하여 개인정보 관련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취급자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개인정보보호담당 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.
- ② 개인정보취급자이거나 개인정보취급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혹은 훼손, 침해해서는 안된다.
- ③ 개인정보취급자의 상위 관리자는 해당 업무 처리가 관련 법규, 개인정보보호정책 등을

준수하는지 관리하여야 한다.

제3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

제7조 (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할)

- 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하여 회사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이행사항 및 담당자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수정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한다.
- ②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(분기 1회)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한다.
- ③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.

제4장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기술적·관리적 안전조치

제8조(개인정보취급자 접근 권한 관리 및 인증)

- 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한다.
- ②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권한 부여,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,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한다.
- ④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,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한 개의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,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한다.

제9조(비밀번호 관리)

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한다. 안전한 비밀번호란 제3자가 쉽게 추측할 수 없으며 비밀번호 해킹 등을 통해서도 비밀번호를 얻어낼 수 없거나 얻어내는데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것을 의미한다. 세부 비밀번호 작성규칙은 다음과 같다.

- ① 8자리 이상 문자 숫자 조합 : 영대문자(A~Z, 26개), 영소문자(a~z, 26개), 숫자(0~9, 10개) 중 2종류 이상으로 구성
- ② 생성한 비밀번호에 12345678 등과 같은 일련번호, 전화번호 등과 같은 쉬운 문자열이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.
- ③ love, happy 등과 같은 잘 알려진 단어 또는 키보드 상에서 나란히 있는 문자열도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.
- ④ 비밀번호의 주기적인 변경 : 비밀번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적어도 3개월마다 변경함으로써 동일한 비밀번호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다.
- ⑤ 동일한 비밀번호 사용 제한 : 2개의 비밀번호를 교대로 사용하지 않는다.

제10조(접근통제)

- ①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. 운영한다.
 - 1.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D와 PW 그리고 IP(Internet Protocol)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 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한다.
 - 2.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(Internet Protocol)주소 등을 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한다.
 - 3.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, P2P,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업무용 컴퓨터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한다.
 - 4.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는 원칙적으로 P2P 프로그램. 공유 폴더 사용을 금지한다. 하지만 반드시 사용해야 할 경우 드라이브 전체 또는 불필요한 폴더가 공유되지 않도록 조치하고, 공유폴더에 개인정보 파일이 포함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조치하도록 한다.

- 5.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업무용 컴퓨터만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업무용 컴퓨터의 운영체제(OS:Operating System)나 보안프로그램 등에서 제공하는 접근통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.
 - ※ Windows 접근통제 사용방법 : [제어판] → [Windows 방화벽]에서 '사용(권장)' 클릭

제11조(개인정보의 암호화)

- ① 암호화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는 고유식별정보,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를 말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. 수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. 단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
- ③ 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.
- ④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(DMZ: Demilitarized Zone)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.
- ⑤ 개인정보처리자가 내부망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위험도 분석에 따라 암호화의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- ⑥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경우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.
- ① 업무용 컴퓨터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 저장하여야 한다.

제12조(접근기록의 보관 및 위·변조 방지)

- ①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은 6개월간 보관·관리한다.
- ②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은 위·변조 및 도난, 분실되지 않도록 하며 수시로 백업을 한다.

제13조(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)

- ① 악성 프로그램 등을 방지. 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, 운영하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.
- 1. 보안 프로그램의 업데이트 실시
- 2. 악성 프로그램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,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실시

제14조(물리적 접근제한)

- ① 전산실,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한다.
- ②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, 보조저장매체 등은 잠금 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.

제5장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훈련

제15조(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훈련의 목적)

안전하게 개인정보가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개인정보보호 대책의 필요성을 이해시키고자 함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시행한다.

제16조(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훈련의 세부 사항)

- ①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정기 보안교육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취급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.
- 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는 매년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
- ③ 개인정보보호교육은 최소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- ④ 신규로 지정된 자는 지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
- ⑤ 교육 방법은 집체교육 뿐 아니라 조직의 환경을 고려하여 인터넷 교육, 그룹웨어 교육 등

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하도록 하고,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나 전문요원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수도 있다.

- ⑥ 개인정보보호 교육내용 예시
 - 1.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설명
 - 2. 내부관리계획의 준수 및 이행
 - 3. 위험 및 대책이 포함된 조직 보안 정책, 보안지침, 지시 사항, 위험관리 전략
 - 4. 개인정보시스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시스템의 정확한 사용법
 - 5. 개인정보의 기술적. 관리적 보호조치 이행
 - 6. 개인정보보호 위반을 보고해야 할 필요성
 - 7. 개인정보보호업무의 절차, 책임, 작업 설명
 - 8. 개인정보보호 관련자들의 금지 항목들
 - 9. 개인정보보호 준수사항 이행 관련 절차 등

제6장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시 조치

제17조 (개인정보 침해사고 조치)

개인정보 유출 시 지체 없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유출사실을 보고하고, 24시간내에 정보주체에게 유출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한다.

- ① 통지방법
 - 1. 서면, 전자우편, 팩스, 전화,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
- ② 조치방법
 - 1. 유출된 개인정보 확산 및 추가유출 방지를 위하여 접속경로 차단, 취약점 점검, 보완.
 - 2. 유출된 개인정보 삭제 등 긴급한 조치 필요 시 해당 조치를 먼저 취한 후 정보주체에게 통지 가능
 - 3.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, 이익을 침해 받은 사람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침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 침해 신고가 접수된 경우 처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제정, 시행한다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8년 3월 3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

[보안서약서_직원]

개인정보보호 서약서

본인 ()는 업무 중에 알게 된 개인정보 및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업무 수행

중이나 업무 수행 후에도 비밀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.

또한 회사에서 수집한 개인의 정보, 고객사의 개인정보, 고객사의 고객 개인정보 등 모든

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회사에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, 적정한 절차

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, 누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.

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비밀의 준수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준수기준인

"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"에 명시된 모든 조항과 회사의 개인정보보호 관리

규정 등 관련된 모든 조항이 포함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 받고 숙지하였습니다.

만약, 이러한 서약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정당한 사유

없이 조회, 유출, 오용할 경우, 형사상 민사상의 법률 조항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

통고 받았으며, 이러한 제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본인의 자의로 서약합니다.

일 시: 201 년 월 일

소 속:

성 명: (인)

[보안서약서_협력업체]

보안서약서

______(이하 "을"이라 한다)는 (주)핑거 (이하 "갑"이라 한다)의 업무수행에 따른 개인의 정보, 고객사의 개인정보, 고객사의 고객 개인정보등 모든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취급시스템(DBMS), 업무상 취득한 비밀 및 제반 보안사항을 타인 또는 타 기관에 누설하지 아니하며 엄수할 것을 서약하며, 안전한 보안을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.

- 1. "을" 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.
- 2. "을" 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비밀의 준수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준수기준인 "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"에 명시된 모든 조항과 회사의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등 관련된 모든 조항이 포함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 받고 숙지하였습니다.
- 3. "을" 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.
- 4. 위 1~3가지 사항은 "을" 의 소속 임직원 및 기타 비 정규직, 아르바이트, 프리랜서등 을의소속인 자는 모두 포함 된다.
- 5. 만약, 이러한 서약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, 유출, 오용할 경우, 형사상 민사상의 법률 조항에 의거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,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통고 받았으며, 이러한 제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본인의 자의로 서약합니다.

년 월 일

을.

업체명:

주소:

대표이사: (인)

[보안서약서_프리랜서]

보안서약서

______(이하 "을"이라 한다)는 (주)핑거 (이하 "갑"이라 한다)의 업무수행 에 따른 개인의 정보, 고객사의 개인정보, 고객사의 고객 개인정보등 모든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취급시스템(DBMS), 업무상 취득한 비밀 및 제반 보안사항을 타인 또는 타 기관에 누설하지 아니하며 엄수할 것을 서약하며, 안전한 보안을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.

- 1. "을" 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.
- 2. "을" 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비밀의 준수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

준수기준인 "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"에 명시된 모든 조항과 회사의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등 관련된 모든 조항이 포함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 받고 숙지하였습니다.

3. 만약, 이러한 서약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, 유출, 오용할 경우, 형사상 민사상의 법률 조항에 의거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,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통고 받았으며, 이러한 제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본인의 자의로 서약합니다.

년 월 일

을.

주소:

전화번호:

성명: (인)